

## ●소방청공고제2020-97호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2일

소 방 청 장

#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395호, 2020.6.9. 일부개정, 2020.12.10. 시행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임시소방시설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 10)

- 1)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
- 전자우편 : sihong74@korea.kr
- 팩스 : 044-205-8915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(044) 205-7522, 팩스 044-205-8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-57호

행정처분 통지

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2일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